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523264 판결 [주식매수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원태, 노영진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변론 종결2018. 3. 16.

판결 선고2018. 4. 2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132,13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282,6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N 주식회사(2017. 5. 1. '주식회사 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는 화성시 P을 본점으로 하여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2. 7. 16.까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2. 6. 8.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이자 사내이사인 Q, 임직원들인 R, S, T, U이 대상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6. 8. 대상회사의 주주들 전부와 함께 피고들과 사이에, 대상회사의 주식 중 22,050주(지분율 70%)를 피고들에게 59억 5,3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다.

(1) 매도인본 매도주식수주주명 보유주식수 매도주식수	(2) 매수인별 매수주식수매수인명 주식수	(3) 매도후 주식수 및 지분율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A	10,000주	5,590주
Q	3,000주	480주
R	2,750주	1,175주
S	4,000주	4,000주
T	6,000주	5,055주
U	5,750주	5,750주
합계	31,500주	22,050주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주식 9,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인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일종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5) 매수인은 대상주식 22,050주를 인수한 후 대상주식 잔금청산일이 포함된 회계연도(2012년)를 기준연도로 2013년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당기순이익의 20%(협의 후 결정)를 현금배당 결의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잔여 주식 9,450주(지분율 30.0% 상당)에 대해 특정시점부터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 받지 못할 경우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 지분율(30.0%)을 곱한 금액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잔여 지분

30%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할 수 있다).

라. 대상회사는 2012 회계연도 및 2013 회계연도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으나, 2014 회계연도 및 2015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대상회사의 2015년도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은 8,177,608,8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제외한 매도인들은 원고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들로서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명의를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매도인이다.

2) 원고는 대상회사로부터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최근 회계기간(2015년도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8,177,608,876원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의 지분율 30%를 적용한 2,453,282,662원(= 8,177,608,876원 × 30%, 원 미만 버림)이다.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53,282,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이외의 나머지 매도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매도인들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 매도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상회사가 2년간 계속하여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2015 회계연도에는 대상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또한,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원고는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이익배당을 상정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위 조항에서 배당률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피고들 또는 대상회사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매도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경업금지의무 및 경영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이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경영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대상회사는 2015. 6.경 유상증자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유상증자시 실권함으로써 현재 그 지분율이 3.34%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위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5)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피고들 명의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피고들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6)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원고 1인인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5, 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상회사의 주식은 전부 원고의 소유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은 원고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3, 7, 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러나 원고만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외에 Q, R, S, T, U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위 주주들이 원고와 함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1, 3, 7, 10, 12,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 각 매도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매도인들 중 원고 외에도 R, S, T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입회한 사실, ③ 피고들은 각 매도인들 앞으로 매도 주식수에 따라 계산된 주식매매대금을 각각 지급한 사실, ④ 대상회사는 2012 회계연도 및 2013 회계연도의 이익배당금을 위 매도인들 중 잔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T, R, Q 앞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외에도 나머지 매도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위 나머지 매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서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지는 점, 따라서 피고들이 주로 실질 주주인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인 다른 매도인들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원고와 나머지 매도인들을 모두 매도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나머지 매도인들도 원고와 함께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9320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나머지 매도인들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4,410주에 한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

1)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의 의미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변경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2. 5. 6.경	주식 100%	조항 없음	갑 제6호증의 3
	주식 70%	제9조(매수인의 계약체결 후 의무)③ 매년 당해연도 결산후(기준일 12월 31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을 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이익금으로 배당한다.④ 결산 후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2회 이상 이익배당을 하지 않거나, 당기순이익의 50% 미만을 배당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당초 미인수한 주식 30%인 9,450주 전량을 직전년도 결산기 평가금액으로 3개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4
2012. 5. 25.경	주식 70%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5) 매수인은 대상주식 22,050주를 인수한 후 대상주식 잔금청산일이 포함된 회계연도(2013년)를 기준연도로 2014년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결의일부터 당기순이익의 20%를 현금배당 결의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잔여주식 9,450주(지분율 30.0% 상당)에 대해 특정시점부터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 받지 못할 경우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 지분율(30.0%)을 곱한 금액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갑 제7호증의 3
2012. 5. 31.경 (최종안)	주식 70%	회계연도를 2012년으로, 정기주주총회 결의년도를 2013년으로 변경하고, 배당률 20% 뒤에 "(협의 후 결정)"을 추가함.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당초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이익배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잔금청산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의 20%를 이익배당'하는 것으로 첫 이익배당에
대하여 배당률을 낮추고,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따로 배당률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그
과정에서 계약서 초안에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정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을 시',

'결산 후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라는 문구를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배당률을 낮추는 대신 대상회사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의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계속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기순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배당은 자본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피고들에게 위법한 배당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피고들에게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원고로 하여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이익배당 요청 또는 배당률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대상회사에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이익배당을 상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대상회사 또는 피고들에게 배당률에 관하여 협의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안건 상정의 요청 또는 배당률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2012 회계연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만 배당률을 협의 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상회사는 2014 회계연도 및 2015 회계연도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2017. 7. 26. 최종적으로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 중 4,410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인도 의무는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주권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경업금지의무 및 경영협력의무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를 포함한 매도인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경영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와 다른 매도인들의 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제9,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에서 '경업금지 및 경영협력의무'라는 제목 아래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경쟁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대상회사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12. 31.경까지만 대상회사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도인인 T, U이 위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와 나머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경영협력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8419)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원고나 다른 매도인들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영협력의무를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거나 원고와 다른 매도인들의 경영협력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매매대금의 산정

1) 인정사실 을 제2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상회사는 2015. 6. 25. 유상증자를 하여 총 발행주식이 131,900주로 증가하였으나, 원고는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보유주식수는 여전히 4,410주이고 그 지분율은 3.3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잔여 주식 9,450주(지분율 30.0% 상당)에 대해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 지분율(30.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을 '잔여 주식 9,450주(지분율 30.0% 상당)'로 하면서도 그 대금은 '순자산에 지분율(30.0%)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잔여 주식의 실제 지분율에 의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의 보유주식수에 상응하는 실제 지분율을 적용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기로 정한 것이고, 괄호 안에 '30.0%'를 병기한 부분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도인들의 지분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의 대금산정방식은 주식가치 평가방식인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시장가치방식 중에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구에서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매도인의 잔여 주식 9,450주에 대해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보유주식수에 대하여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순자산가치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보유주식의 일부만을 매도한 원고가 2년 이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들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주식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경영의 성패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지분율 변동에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는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들의 실제 지분율이 극히 작아지더라도 9,450주에 대하여 항상 대상회사 순자산가치의 30%를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이는 순자산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도 그러하나, 이 사건과 달리 경영 성공으로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매도인들은 신주인수에 참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매도인들의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매도인들은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더라도 순자산 가치의 30% 상당액만을 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또한 사회일반의 상식, 거래의 통념이나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어느 경우에도 거래의 통념이나 형평의 이념 등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유상증자를 감행한 2015년 무렵에는 이미 피고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주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유상증자로서 원고의 지분을 희석시킨 다음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 현재의 지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둔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지분이 희석된 것은 원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둔 목적과 취지가 원고에게 대상회사의 사정변경과 관계없이 무조건 30%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거나 대상회사가 시행한 유상증자가 원고의 주식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2015년도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인 8,177,608,876원에 원고의 지분율인 3.34%를 곱한 273,132,136원(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마.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주식매도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바. 불가분채무

피고들이 일체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피고들이 인수하게 될 주식이 피고들 중 누구에게 귀속될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273,132,1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상범

판사이재경

판사서청운